[별표 1-6]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신설 2012.12.3>

구 분	세부 내용
기본원칙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주택지구 미관증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본 기준은 공공주택지구별·지역별·업종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나. 간결하고 쾌적한 시각환경의 공공주택지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성한다. 다. 화려함 보다는 친근함을 주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디자인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2. 가로변 도시미관의 증진과 건축물의 제모습 찾기 및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성한다.
설치기준	1.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하여 본 기준에서 제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시·군·구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본 기준의 내용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와 도로가 접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에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간판은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없다. 4. 네온류, 전광류 및 점멸등을 이용한 간판은 설치할 수 없으며, 특정 상업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판의 색채와 조명(색상, 밝기 등)은 전체 건축물 및 이웃하는 간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간판 또는 건축물을 강조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구 분	세부 내용
	5. 가로별·업종별로 간판의 크기·문자·색상·도형·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되, 건축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의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다. 7.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간판의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디자인 등을 미리 설정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택지 또는 건축물 매각할 때에 그 내용을 매각공고문에 표시한다. 8. 공공주택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관련법에 따라 건축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판배치도면을 첨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였던 간판표시계획서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	1. 가로형 간판 가. 건축물의 3층 이하에 위층과 아래층 폭 이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상하 및 좌우로 인접된 업소의 간판 크기는 동일하게 한다. 나.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최상단 1개의 측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물명을 표시하는 경우 (2)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을 점유하는 업소의 경우 (3) 건물내 전체 입점 업소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건축물의 출입구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라. 도로와 도로가 접한 모퉁이 양쪽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은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구 분	세부 내용
	마. 입점 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5개 이상의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한 업소도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에 상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은 건축물 부지 내에서 통행 및 교통신호 등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2. 세로형 간판 가. 건축물의 1층 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 입구 양측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서로 통일된 크기와 형상을 가지도록 한다. 나. '가'항에 따른 간판은 가로형 간판 부착이 곤란한 4층 이상 업소 또는 지하층 입주 업소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다. 당해 건축물 명이나 상징도형에 한하여 건축물 측면의 최상단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돌출형 간판 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 설치 원칙의 예외로서 가로형 또는 세로형 간판 외에 0.36㎡ 이내의 소형 돌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추가로 설치하는 소형 돌출형 간판은 1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업소에서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크기는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구 분	세부 내용
	라. 보행자 안전과 건축물 미관을 고려하여 5층 이상의 높이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70㎝ 이내(벽면 기준), 세로 80㎝ 이내로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창문부착 광고물 가. 건축물 출입문과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창문부착 광고물의 높이는 20㎝ 이하의 띠 형태로 설치한다. 나. 출입문 광고물은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지상 1m 이하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5. 옥상광고물 가. 옥상광고물은 공공주택지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종합병원, 대형 유통시설 등 공익목적 또는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항	1.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한다. 나.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공공주택지구는 본 기준에 따라 보완한다. 다.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 공고중인 단지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기준을 정하며, 협의된 내용은 매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표시된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내용을 매수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공지하여야 한다.